

서울특별시 「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」 민간위탁
재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56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 출 일 : 2022년 10월 17일
- 라. 회 부 일 : 2022년 10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」은 청년정책종합지원공간 시설로서, 금천구 지역 및 서울 청년들에 대한 종합상담 제공, 정책정보 집적 및 연계, 관계망 형성 지원,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, 청년 사회진입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
- 나.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0조 및 제21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, 제6조에 따라
- 다. 청년 종합 상담 및 공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(단체)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위탁기간 : 10개월 (2023. 3. 1.~2023. 12. 31)
- 위탁사무 :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시설 관리·운영 사무
※ 前 시설명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
- 시설위치 :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, G밸리창업복지센터 1층~2층
- 소요예산 : 517,000천원 (※'23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시설 관리·운영 사무
 - ① 서울청년센터 오랑 기능 수행
 - ② 지역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·운영
 - ③ 지역자율 프로그램 운영(교육·강연 등)
 - ④ 청년공간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성
 - ⑤ 「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」의 공유재산 및 물품 설치 관리
 - ⑥ 그 밖에 청년문제 해소 대책과 관련한 사무 등
- 위탁대상 :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- 시설규모 : 연면적 345.22㎡
- 시설구성 : 상담실, 회의실, 세미나실, 협업공간, 휴게공간 등

○ 시설 위치도 및 사진

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1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「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시장의 책무)
- 「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 등)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 편성 추진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민간위탁 추진계획(미래청년기획단-25527, '22. 7. 22.)
-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2. 9. 2.) : 적정

5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(2022년 12월 31일)인 ‘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’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,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3. "위탁사무"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
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5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6. "중요내용"이란 위탁유형 변경,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,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.

- ‘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’(이하 ‘금천 오랑’)은 시설형 민간위탁¹⁾ 유형으로 2015년 2월 ‘무중력지대 G밸리’ 운영사무의 1차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, 2017년 1월 2차, 2019년 12월 3차에 걸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음.

1) 시설형 민간위탁(예산지원형) :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.

□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추진 경위

- '14. 12. 19. :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
- '15. 2. 4. : (1차)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사무 위.수탁 협약체결
- '17. 1. 1. : (2차) 재계약에 따른 민간위탁 위.수탁 협약체결
- '19. 9. 2. :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사무 재위탁 시의회 보고
- '19. 12. 26. : (3차)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사무 위.수탁 협약체결
- '22. 5. 11. : 시설 이전 및 재운영 ※ 변경협약 체결
- '22. 7. 22. :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민간위탁 추진계획(재위탁)
※ 미래청년기획단-25527(2022.7.22.)

— < 그 간의 위탁 경과 > —

- ▶ 최초위탁(1차): '15. 2. 4.~'16. 12. 31. (수탁업체: (주)프로젝트 노아)
- ▶ 재 위 탁(2차): '17. 1. 1.~'19. 12. 31. (수탁업체: (주)프로젝트 노아)
- ▶ 재 위 탁(3차): '20. 1. 1.~'22. 12. 31. (수탁업체: (주)디노마드)
- ※ 시의회 동의안: 1회차 민간위탁 원안가결[의안번호 09-00149('14.12.19)]

- '금천 오랑'은 청년의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,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,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, 청년공간 홍보·운영 등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공간 시설로, 2015년 개관 이후 (주)프로젝트 노아가 운영해오다 (주)디노마드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해 왔음.

<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현황 >

- 시설위치 :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, G밸리창업복지센터 1층~2층
- 시설규모 : 345.22m² (연면적)
- 위치도 및 시설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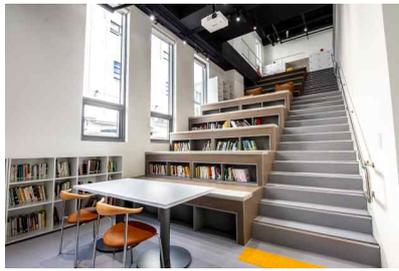
< 위치도 >



< 라운지(1층) >



< 공유주방(1층) >



< 계단서가(1층~2층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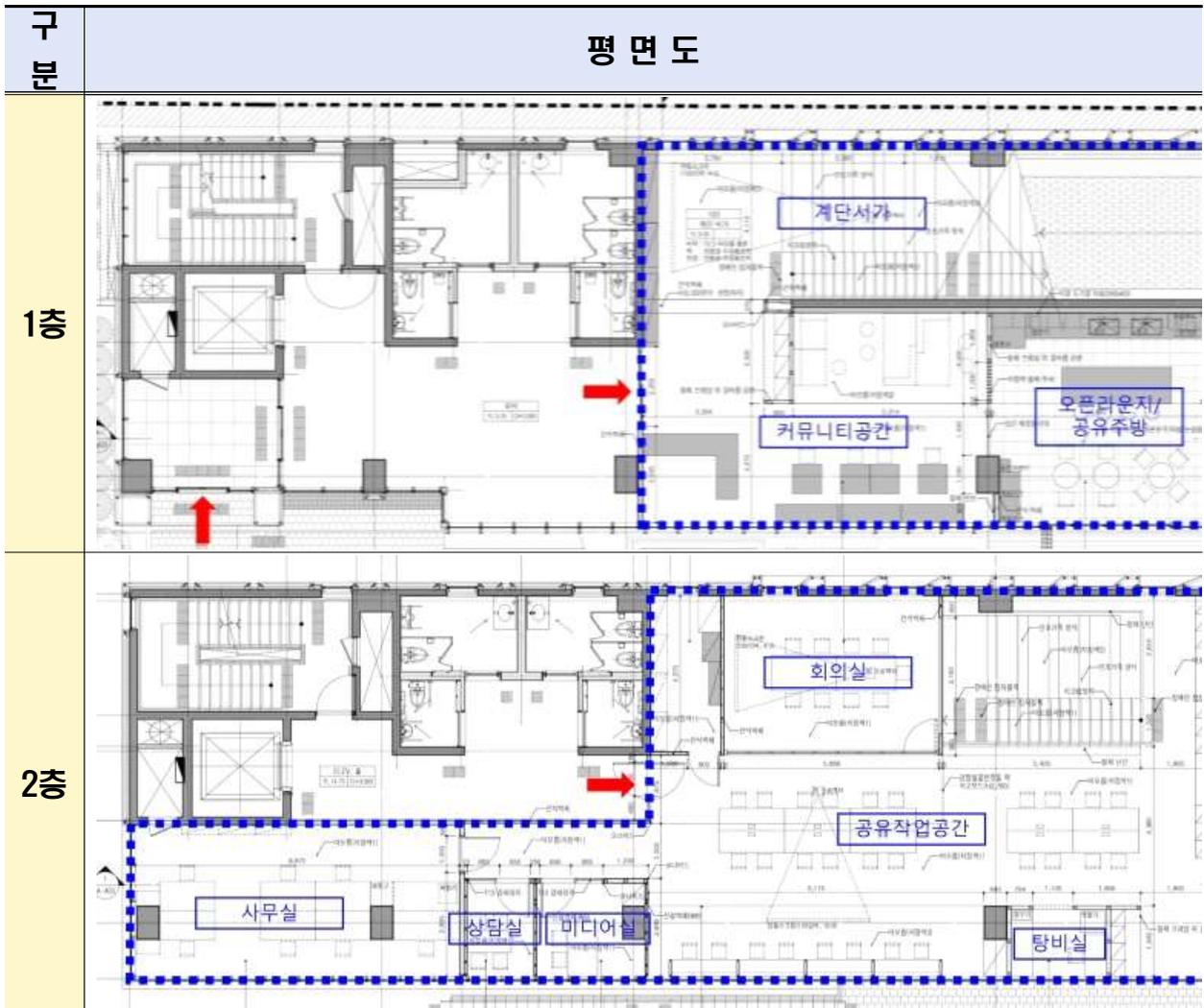


< 커뮤니티홀(2층) >



< 회의실(2층) >

○ 시설현황 : 상담실, 라운지, 공유주방, 운영사무실, 회의실 등



| 층수 | 구역 명칭 | 세 부 용 도 | 면적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층 | 라운지 | - 코워킹 및 각종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 | 25㎡ |
| | 공유주방 | - 함께 요리하고 음료와 간식을 즐기는 공간 | 30㎡ |
| 1층~2층 | 계단서가 | - 공유 서재 운영, 휴식 | 39㎡ |
| 2층 | 회의실 | - 업무 회의와 소규모 수업 진행 대관 운영 | 26㎡ |
| | 상담실1 | - 1:1 대면 상담오랑 | 5㎡ |

| | | | |
|--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| | - 온라인 프로그램 스튜디오 | |
| | 상담실2 | - 1:1 화상면접 등으로 사용 가능한 면접공간 - 1인 대관 운영 | 4 m ² |
| | 커뮤니티홀 | - 개인업무 및 스터디 공간 - 테이블, 복합기, 공용PC 배치 | 75 m ² |

- 운영시간 : 평일 10:00~22:00, 토요일 10:00~17:00 ※일요일·공휴일 휴관
- 이용대상 :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※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
- 시설관리 : 시민이용관리, 유지보수, 안전관리, 대관운영 등
- 물품관리 :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비품 및 소모품 관리

□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위탁사무 세부내용

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사무

| 분류 | 연번 | 세부사무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운영 | 1 | 서울청년센터 오랑 기능 수행 |
| | 2 | 지역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·운영 |
| | 3 | 지역자율 프로그램 운영(교육·강연 등) |
| | 4 | 청년공간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성 |
| | 5 | 그 밖에 청년문제 해소 대책과 관련한 사무 등 |
| 시설운영 | 6 | 「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」의 공유재산 및 물품 설치 관리 |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- 지난 2014년 「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 이 가결('14. 12. 19.)되어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시기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개정²⁾되어 2019년 9월 재위탁 보고를 동의로 갈음한 바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‘금천 오랑’의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재위탁 공모를 해야 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이며, 재위탁을 위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,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지도·점검 및 종합성과평가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- 제12조(재계약)**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,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
2) 의안번호 10-00313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2019.3.8.

-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(안 제4조의2 제2항)
- 성과보고서에 위탁사무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4조의3)
- 시의회의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3 제5항)

〈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종합성과평가결과 〉

| 평가영역 | 평가범주 | 지표배점 | 득점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공통사무평가 | 사업인프라 | 22.00 | 12.95 |
| | 사업활동 | 17.00 | 13.60 |
| 개별사무평가 | 사업성과 | 38.00 | 32.64 |
| | 지도점검 이행노력 | 8.00 | 5.70 |
| 사용자만족도평가 | 만족도 제고노력 | 15.00 | 12.18 |
| 감점사례 | 협약사항 위반 (제3자 위탁금지, 협약이행보증내용 위반 등) ※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| -18.00 | -6.00 |
| 합계 | | 100.00 | 71.07 |

※ 출처: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_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-(2022.06)

- ‘금천 오랑’에 대한 2022년도 종합성과평가 결과, 수탁기관인 (주)디노마드는 공통사무평가(사업인프라, 사업활동)와 개별사무평가(사업성과, 지도점검 이행노력), 사용자만족도(만족도 제고 노력) 평가 및 감점사례 등을 종합하여 총 71.07점을 득점하였는바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결과 75점 미만으로써 재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

〈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(재계약 배제) 해야 하는 경우 〉

-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
-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
- ③ 위탁기간 중 지도·점검, 종합성과평가, 감사(회계감사 등)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
-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·성폭력, 인권침해, 사업비 횡령, 부당 노동 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
- 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‘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(환수 등) 결정’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
* ③, ④, ⑤에 해당하는 기관 여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

□ **최근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**

[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]

- 심의일시 : 2019. 11. 7. (목) 14:00~16:00, 청년청 회의실(서소문2청사)
- 심의위원 : 6명(외부 5명, 내부 1명)
- 심의대상 : 2개 단체
- 심의방법 : 정성적 평가(70점, 서면·제안평가)※ 정량적 평가(30점) : 담당부서 사전평가
- 선정방식 : 정량적·정성적 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법인(단체) 중 고득점자 순으로

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
- 심의결과 : (주)디노마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| 순위 | 단체명 | 평가항목 | 배점 | 평가점수 | 비고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1 | (주) 디노마드 | 정량평가 | 30 | 25.2 | |
| | | 정성평가 | 70 | 58.5 | |
| | | 합계 | 100 | 83.7 | |
| 2 | 꿈지락네트워크 | 정량평가 | 30 | 28.2 | |
| | | 정성평가 | 70 | 55.25 | |
| | | 합계 | 100 | 83.45 | |

- 회의록 : 적격자심의결과보고서로 같음하여 회의록 미작성

- 청년공간 사업을 매년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기관(단체)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수행할 단체가 많지 않다는 사유로 재계약 및 재위탁이 빈번한 점을 살펴볼 때, 이번 사업이 민간에서 경쟁력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할 수 있음.
- 한편, ‘금천 오랑’의 최근 3년간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어 균형적인 사업예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,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주관부서는 예산배정에 관리·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, 중·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법절차에 따른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됨.

□ **최근 3년간 정산결과**

<2020년 회계연도> ※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교부 (단위: 원)

| 센터명 | 구 분 | 예산교부액(A) | 집행금액(B) | 집행잔액(C) | 집행률(B/A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| 계 | 586,245,000 | 542,105,758 | 44,139,242 | 92% |
| | 인건비 | 245,198,000 | 242,412,639 | 2,785,361 | 99% |
| | 운영비 | 146,678,000 | 127,783,547 | 18,894,453 | 87% |
| | 사업비 | 184,569,000 | 162,109,572 | 22,459,428 | 88% |
| | 위탁수수료 | 9,800,000 | 9,800,000 | - | 100% |

<2021년 회계연도> ※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교부 (단위: 원)

| 센터명 | 구 분 | 예산교부액(A) | 집행금액(B) | 집행잔액(C) | 집행률(B/A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| 총계 | 595,000,000 | 584,308,450 | 10,691,550 | 98% |
| | 인건비 | 297,202,000 | 297,029,344 | 172,656 | 100% |
| | 운영비 | 133,574,000 | 129,562,537 | 4,011,463 | 97% |
| | 사업비 | 154,278,000 | 148,118,899 | 6,159,101 | 96% |
| | 위탁수수료 | 9,946,000 | 9,597,670 | 348,330 | 96% |

<2022년 회계연도> ※ 계약심사 미시행 (전년대비 5% 이내 예산증액) (단위: 원)

| 센터명 | 구 분 | 예산교부액(A) | 집행금액(B) | 집행잔액(C) | 집행률(B/A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| 총계 | 575,000,000 | 315,568,334 | 259,431,666 | 55% |
| | 인건비 | 286,726,000 | 176,000,201 | 110,725,799 | 61% |
| | 운영비 | 114,088,000 | 59,353,390 | 54,734,610 | 52% |
| | 사업비 | 164,576,000 | 80,214,743 | 84,361,257 | 49% |
| | 위탁수수료 | 9,610,000 | - | 9,610,000 | 0% |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에 따르면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 위탁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, 최근 3년간의 결산자료 비교·분석 및 당해 연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‘인건비, 사업비, 운영비’ 등 세부항목의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하며,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³⁾를 제외하고는 위탁사업비(수탁기관 세출예산) 중 인건비의 비율이 50%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바, 균형적인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 할 것임.

3) 불가피한 경우(예시) : 청소 등 성격상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사무

□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회의록

<000 위원>

- 지금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센터 예산을 보면 사업비는 30%가 안 되고, 30%가 안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랑 운영비로 나머지 70%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센터도 다 이렇게 운영되나요? 보통 그런가요? 사업은 요만큼 하고 그것을 관리한다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돈 쓰고 이런 것으로 다른 모든 사업 센터들이 다 이런 건지, 이 오랑만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.

<담당 공무원 (조직담당관)>

- 저희 검토의견서 26페이지 보면 금천 오랑하고 청춘빌딩하고 주요 프로그램들을 보면 청춘빌딩에서 마음건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,

<000 위원>

- 수당 참여자 관리하고, 은둔형 외톨이 발굴 지원하는 게 이쪽이 아닐 텐데요.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있어서 이 센터를 스톱을 시키면 서울시의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좀 문제가 생길까 저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.

<000 위원>

- 그런데 저도 이게 저희 동네라서 알고 있는데, 관악구에서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꿈지락네트워크에서 금천구 청춘빌딩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. 같은 민간위탁체예요.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넘긴다고 못할 위탁체는 아닌 것 같고, 사업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크게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두 개 시스템을 정리할 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기도 하고. 관악도 2개가 있는 것 같았는데,

<위원장>

- 이게 재위탁 공개모집인데 공모잖아요. 공모절차를 다 해서 10개월만 재위탁하는 것에는 너무 행정비용이 우리가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?

<담당 공무원 (조직담당관)>

- 어차피 다른 시설하고 기한을 맞춰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 에그게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.

<위원장>

-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10개월만 한다라고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1년이 안 되는데,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게 나가는 게 다 있을 것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?

<000 위원>

- 이게 어차피 공개모집을 해도 디노마드나 아니면 꿈지락네트워크, 둘 중에 하나가 맡게 된다면 연관성은 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. 새로운 단체가 들

어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.

<위원장>

-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기관 들한테 간다라는 전제가 너무 밑에 깔리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심의 보류를 할 것이면 다 심의 보류가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

- 20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, 타 자치구 청년센터의 정비기간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10개월로 조정하는 ‘조건부 적정’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자치구로 이관 협의를 완료해야 할 것이며,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□ 최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- 심의결과 : 20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2.9.2.)

| 위탁사무명 | 유 형 | | 수탁 기관 | 위탁 기간 | 심의 결과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|
|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| 재위탁 | 시설형 | - | 1년 10개월 | 조건부 적정 | [조건] -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조에 따라 자치구(서초, 강서) 청년센터의 정비기간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민간위탁 기간을 10개월로 조정하고 해당 기간내에 자치구 이관 협의완료 |

※ 위원회 주관 : 조직담당관

⇒ 조건부적정 후 조건 이행하여 적정 전환('22.10.05)

- 또 최근 3년간 ‘금천 오랑’의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살펴보면, 2020년 12건, 2021년 9건, 2022년 1건의 시정조치 경고를 받은 바, 다년간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으며, 재위탁 수탁기관 운영 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임.

- 이와 관련하여 청년관련 유사 공간 및 지원센터와의 통합 가능성, 역할과 기능의 협업 등에 대한 상위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, 지역별 청년특화사업이나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과 연계하여 금천 오랑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위탁사무들에 대하여 단순한 결과치를 뛰어넘어 오랑이나 오랑 사업들의 발전적 변화를 증명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자료 축적과 제시가 요구되어야 할 것임.
- 다만,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청년공간을 설치·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와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아울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(2022.08.개정)」과 ‘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’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, 향후 미래청년기획단은 ‘시의회 동의 및 보고 안건’의 경우 시의회 하반기 정례회(다음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개최되는 회기) 이전 회기에 제출 및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정례회 전에 동의안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〈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산편성 기준 〉

5) 예산편성(주관부서)

- 대 상 : 민간위탁 조례(제4조의3 등)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
- ※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(조례 제4의3 5항)
- 절 차 :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→ 시의회 동의 → 예산안 의결
- 유의사항
 - **“시의회 동의 및 보고 안건”은 시의회 하반기 정례회(다음 연도 예산심의를 위해 개최되는 회기) 이전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운영평가위원회 회차 선택**
 - 법령이나 조례 제.개정,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.의회 동의 과정에서 보류 등 불가피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

붙임 1

□ 서울청년센터 시설별 수탁기관 현황(12개소)

(‘22.10.30.기준)

| 연번 | 구분 | 위 치 | 규모 | 인력 | 운영방법 | 수탁기관 | 위탁기간 | 개 관 |
|----|-----------|--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
| 1 | 관악 오랑 | 관악구 신림동 241-22 302호 | 329㎡ | 6 | 자치구 민간위탁 | (사)꿈지락네트워크 | 2019.7.1.~ 2022.4.30. *재계약(~24.9.30.) | '20.2. |
| 2 | 금천 오랑 |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G밸리창업복지센터 1~2층 | 345㎡ | 6 | 서울시 민간위탁 | ㈜디노마드 | 2020.1.1.~ 2022.12.31. | '20.2. |
| 3 | 강동 오랑 | 강동구 올림픽로 796, 4층 | 403㎡ | 6 | 자치구 민간위탁 | ㈜45도컴퍼니 | 2020.5.8.~ 2022.12.31. | '20.5. |
| 4 | 은평 오랑 | 은평구 통일로 67길 9, A동 2층 | 358㎡ | 6 | 자치구 민간위탁 | 꿈꾸는다락방 | 2020.6.1.~ 2022.12.31. | '20.6. |
| 5 | 동대문 오랑 | 동대문구 왕산로 210 | 481㎡ | 6 | 서울시 민간위탁 | (사)서울유스랩 | 2020.7.23.~ 2022.12.31. | '20.12. |
| 6 | 노원 오랑 |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5 노원금융타워 9층 | 297㎡ | 6 | 자치구 민간위탁 | 청소년과나란히 | 2020.9.8.~ 2023.9.7. | '20.11. |
| 7 | 성동 오랑 | 성동구 왕십리로 350 4~5층 | 341㎡ | 6 | 자치구 민간위탁 | 성동청년플랫폼 | 2020.10.1.~ 2022.9.30. *재위탁(~25.9.30.) | '20.11. |
| 8 | 마포 오랑 |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, 마포한강푸르지 오 지상 1층 101호 | 271㎡ | 6 | 자치구 민간위탁 |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| 2020.12.1.~ 2021.12.31. *재계약(~22.12.31.) | '20.12. |
| 9 | 광진 오랑 | 광진구 능동로 245 2~3층 | 385㎡ | 6 | 자치구 민간위탁 |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| 2020.1.1.~ 2021.12.31. *재계약(~23.12.31) | '21.2 |
| 10 | 서초 오랑 | 서초구 반포동 19-11 | 556㎡ | 6 | 서울시 민간위탁 | (사)청년여성 문화원 | 2021.6.1.~ 2023.12.31. | '21.10 |
| 11 | 강북 오랑 | 강북구 수유동 269-8 | 331㎡ | 6 | 자치구 민간위탁 |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| 2022.1.26.~ 2024.12.31. | '22.4 |
| 12 | 강서 오랑 | 강서구 화곡동 1170 | 602㎡ | 6 | 서울시 민간위탁 | 미담장학회·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콕 | 2022.3.21.~ 2023.12.31. | '22.4 |

□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인력 운영계획

○ 시설 조직도(안)



※ 운영 인력은 6인으로 구성하여 운영 (청소, 경비 용역 별도)

○ 인력구성 표준(안)

| 응시분야 | 주요업무 | 인원 | 직위 | 핵심역량 |
|------|---|----|-------|---|
| 정규 | ○ 센터총괄, 대외협력 | 1명 | 센터장 | ○ 청년정책의 이해 ○ 조직관리 및 리더십 |
| | ○ 예산 및 행정관리 ○ 직원 교육관리 ○ 사업 운영 지원 | 1명 | 선임매니저 | ○ 행정 및 회계 이해 ○ 직원 교육 관리 |
| | ○ 종합상담 운영(전담인력) ○ 청년맞춤형 정보집적·제공 ○ 커뮤니티 기획운영 | 2명 | 매니저 | ○ 소통기술 및 문제해결능력 ○ 기획 및 정보 수집·가공 |
| | ○ 지역 자율사업 ○ 공간운영 활성화 및 홍보 | 2명 | 매니저 | ○ 기획 및 소통기술 ○ 시설관리 및 대민응대 ○ 홍보 및 위기관리 |

※ 서울청년센터의 상담이란? * 종합상담 전담 운영인력 최소 2인 배치

: 청년들의 종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, 적절한 정보 및 정책을 연계하는 역할.

(필요역량 : 청년의 상황에 대한 이해·공감력, 적절한 연계기관에 대한 정보, 위기수준에 대한 인지 등)

□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소요예산(안)

○ 2023년 운영예산(안) : 587,400천원

- 산출내역(민간위탁금)

| 예산과목 | | | 예산계획 | 구성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관 | 항 | 목 | | |
| ① 인 건 비 | 기본급 | | 182,376,000 | 31.1% |
| | 제수당 | 연장근로수당 | 28,872,000 | 4.9% |
| | | 정액급식비수당 | 9,360,000 | 1.6% |
| | | 가족수당 | - | 0.0% |
| | | 연차수당 | 1,280,000 | 0.2% |
| | | 직급보조수당 | 9,603,000 | 1.6% |
| | | 명절휴가수당 | 15,198,000 | 2.6% |
| | | 퇴직급여총당금 | 20,787,000 | 3.5% |
| | 사회보험료 | 국민건강보험료 | 8,370,000 | 1.4% |
| | | 노인장기요양보험료 | 1,027,000 | 0.2% |
| | | 국민연금보험료 | 10,777,000 | 1.8% |
| | | 산재보험료 | 2,299,000 | 0.4% |
| | | 고용보험료 | 2,754,000 | 0.5% |
| | 소 계 | | | 292,703,000 |
| ② 운 영 비 | 일반운영비 | 사무관리비 | 57,711,000 | 9.8% |
| | | 교육훈련비 | 1,429,000 | 0.2% |
| | | 운영수당 | 3,087,000 | 0.5% |
| | | 급량비 | 2,263,000 | 0.4% |
| | | 임차료 | 10,290,000 | 1.8% |
| | | 공공요금 및 제세 | 5,683,000 | 1.0% |
| | | 시설장비유지비 | 15,435,000 | 2.6% |
| | 국내여비 | 관내출장 | 4,445,000 | 0.8% |
| | | 관외출장 | 432,000 | 0.1% |
| | 업무추진비 | 부서운영업무추진비 | 2,160,000 | 0.4% |
| | | 정원가산업무추진비 | 493,000 | 0.1% |
| | 자산취득비 | 공간조성물품 | 22,638,000 | 3.9% |
| | 소 계 | | | 126,066,000 |
| ③ 사 업 비 | 1.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| | 30,870,000 | 5.3% |
| | 2. 청년지원정보 제공 | | 10,290,000 | 1.8% |
| | 3.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| | 30,870,000 | 5.3% |
| | 4. 지역자율 프로그램 | | 45,151,000 | 7.7% |
| | 5. 청년공간 홍보 및 운영 | | 51,450,000 | 8.8% |
| | 소 계 | | | 168,631,000 |
| 위탁비 총 계 | | | 587,400,000 | 100.0% |

※ 천원이하 절사, 예산심의에 따라 '23년도 위탁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

붙임 4

○ 예산 세부내역(안)

| 관 | 항 | 금액(천원) | 산출내역(원)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|
| 인건비 | 기본급 | 182,376 | - 센터장 : 3,337천원×1명×12개월=40,044천원 - 선임매니저 : 2,493천원×1명×12개월=29,916천원 - 매니저 : 2,342천원×4명×12월=112,416천원 |
| | 제수당 | 64,313 | - 직책수당 : 1명×12개월×300천원=3,603천원 - 식비 : 130천원×6명×12개월=9,360천원 - 직급보조 : 5명×12개월×100천원=6,000천원 - 연차수당 : 기준단가×2일×6명=1,280천원 - 연장수당 : 시급×1.5배×20시간×12개월×6명=28,872천원 - 명절수당 : 기본급×50%×2회×6명=15,198천원 |
| | 퇴직급여충당금 | 20,787 | - 센터장 : 4,609천원×1명=4,609천원 - 선임매니저 : 3,338천원×1명=3,338천원 - 매니저 : 3,210천원×1명4명=12,840천원 |
| | 사회보험료 | 25,227 | - 국민연금 : (상주인력 총기본급+총제수당-비과세)×4.5%=10,777천원 - 건강보험 : (상주인력 총기본급+총제수당-비과세)×3.5%=8,370천원 - 고용보험 : (상주인력 총기본급+총제수당-비과세)×1.15%=2,754천원 - 산재보험 : (상주인력 총기본급+총제수당-비과세)×0.96%=2,299천원 - 장기요양 : (건강보험료)×12.27%=1,027천원 |
| 소 계 | | 292,703 | |
| 운영비 | 일반운영비 | 95,898 | <p>< 사무관리비 57,711천원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인물 : 5천원×1,000부=5,000천원 - 명함 : 20천원×6명=120천원 - 복사용지 : 20천원×25박스=500천원 - 도서구입비 : 1식×300천원×4회=1,200천원 - 시설관리비 : 1,100천원×12개월=13,200천원 - 세무기장료 : 200천원×12개월=2,400천원 - S/W 사용료 : 200천원×12개월=2,400천원 - 다과비 : 8천원×30명×12개월=2,880천원 - 가구세탁비 : 200천원×6개×4회=4,800천원 - 물품운송비 : 15천원×10회=150천원 - 소모품비 : 350천원×12개월=4,200천원 - 신원보증보험 : 10천원×2명=20천원 - 보안용역(야간) : 1,500천원×12개월=18,000천원 - 보안시스템 : 200천원×12개월=2,400천원 - 지급수수료 : 1식×441천원=441천원 <p>< 교육훈련비 1,516천원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원워크숍 : 1식×1,516천원=1,516천원 <p>< 운영수당 : 3,000천원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원회운영 : 150천원×5명×4회=3,000천원 <p>< 급량비 2,304천원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근매식비 : 8천원×6명×4회×12개월=2,304천원 <p>< 임차료 10,249천원 ></p> |

| 관 | 항 | 금액(천원) | 산출내역(원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수기 : 30천원×2대×12개월=720천원 - 청정기 : 60천원×6대×12개월=4,320천원 - 노트북 : 110천원×2대×12개월=2,640천원 - 복합기 : 150천원×1대×12개월=1,800천원 - 기타장비 : 1식×769천원=769천원 <p><공공요금 및 제세 5,683천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편발송 : 5천원×12회×12개월=720천원 - 유선통신비 : 30천원×12개월×7대=2,520천원 - 무선통신비 : 70천원×12개월×2대=1,680천원 - 지급수수료 : 763천원×1식=763천원 |
| | 국내여비 | 4,87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내출장 20천원×3회×6명×12개월=4,320천원 - 관외출장 실비지급×4회=557천원 |
| | 업무추진비 | 2,58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서운영업무추진비 : 175천원×12개월=2,100천원 - 정원가산업무추진비 : 80천원×6명=480천원 |
| | 자산취득비 | 22,7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간디자인 : 1식×22,711천원=22,711천원 |
| 소 계 | | 126,066 | |
| 사업비 | 1.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| 30,87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상담사위촉 : 360천원×6명×10회=21,600천원 - 다과비 : 5천원×10명×25회=1,250천원 - 교보재제작 : 13천원×10명×60회=7,800천원 - 진행경비 : 22천원×10회=440천원 |
| | 2. 청년지원정보 제공 | 10,29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채널운영 : 25천원×12개월=300천원 - 콘텐츠제작 : 250천원×12개월=3,000천원 - 문자발송비 : 500천원×12개월=6,000천원 - 지적재산권이용료 : 1식×990천원=990천원 |
| | 3.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| 30,87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계망형성프로그램 운영 : 5,000천원×3회=15,000천원 - 콘텐츠제공프로그램 운영 : 2,500천원×6회=15,000천원 - 분석 및 후속모임 운영 : 435천원×2회=870천원 |
| | 4. 지역자율 프로그램 | 45,15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특화사업 운영 : 1식×39,151천원=39,151천원 - 협력사업 및 간담회 : 1,500천원×4회=6,000천원 |
| | 5. 청년공간 홍보 및 운영 | 51,45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보광고료 : 22,000천원×2회=44,000천원 - 공간활성화 기획운영 : 745천원×10회=7,450천원 |
| 소 계 | | 168,631 | |
| 위탁수수료 | | 0 | - 해당없음 |
| 부가가치세 | | 0 | - 해당없음 |
| 합 계 | | 587,400 | |